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이재강・김문수・박정현

양부남 • 박희승 • 민형배

김 현 · 김승원 · 박지원

정성호 · 김준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.

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・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, 반출・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

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 13조제1항 등)

법률 제 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"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"를 "통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"로 하고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통일부장관은"을 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반출·반입 물품등의 수량, 품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통일부 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3조(반출·반입의 승인) ① 물 제13조(반출·반입의 승인) ① -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, 거 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-----통일부장관 또는 특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 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다. <후단 신설> 승인을 받아야 하며,----------. 이 경우 시·도지사 가 승인할 수 있는 반출・반입 물품등의 수량, 품목 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② <u>통일부장관은</u> 제1항의 승인 ② 통일부장관 또는 시・도지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| ③ 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 사는-----

우 남북교류·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·반입 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,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 다.

- ④ <u>통일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 는 물품등의 품목,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 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.
- ⑤ <u>통일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 인받은 자(이하 "교역당사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14조(반출·반입 승인대상 물 저 품등의 공고) <u>통일부장관은</u> 물 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 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

④ <u>통일부장관 또는 시·도지</u>
<u>사는</u>
⑤ 통일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<u>사는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ll14조(반출·반입 승인대상 물
품등의 공고) <u>통일부장관 또는</u>
<u>시·도지사는</u>

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 야 한다.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• 2. (생략)

제15조(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) 지 ① <u>통일부장관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·수량 ·품질,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(調整)을 명 할 수 있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.

1. ~ 5. (생략)

- ② <u>통일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 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<u>통일부장관은</u> 교역당사자에 게 물품등의 반출·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)
① 통일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<u>사는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통일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사는
·.
③ 통일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사는

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